학생생활규정

이 산 중 학 교

http://esan.ms.kr

차 례

Ⅰ.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 1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 2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 2

제4장 교내 생활 ····· 7

제5장 교외 생활 ····· 9

제6장 학생 두발·복장 ····· 10

제7장 정보에 대한 권리와 예절 ····· 11

제8장 학업중단 예방 ····· 11

Ⅱ. 학생 자치 규정

제1장 총칙 ····· 17

제2장 학생자치회 ····· 17

제3장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출 ····· 19

제4장 학급자치회 임원 선출 ····· 22

Ⅲ. 학생생활교육규정

제1장 총칙 ····· 25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28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 조치 ····· 28

Ⅳ.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규정 ····· 35

Ⅴ. 부록 ····· 40

Ⅰ. 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이산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31조와 경기도 조례 제4085호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에 의거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산중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 문화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3조 [방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조건,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성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다문화 가정 등의 사유로 부당한 벌을 받지 않도록 하며,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4부터 제20조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제3항(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5조 【정의】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 【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7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8조 【조언】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상담】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

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의】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훈육】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라.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마.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7. 교원은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8.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필요시 내교 요청 후 물품인계)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문자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후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훈계】

1.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3조【보상】

1.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7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1.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학년상담실 및 교무실, 상담실, 민원면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2.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3.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4.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5.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6.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제18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나.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다.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라.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2.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경우 학급 내(또는 교무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단체용 전파차단 파우치를 활용할 수 있다.
3.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 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4.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교내 생활

제19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 [등하교]
1.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2. 보호자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제21조 [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22조 [수업시간]
1. 수업의 진행에 적극 참여한다.
2.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3.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제23조 [수업 외 시간] 학생은 수업, 자율학습 시간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자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2.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는 행위
3. 화투·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는 행위
4. 학교폭력 행위
5.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는 행위

제24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여가시간에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한 활동은 자제하며 남을 희롱하거나 야유 및 시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4. 꽃이나 나무를 함부로 꺾지 말고 아끼고 보호 하며, 화단 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5. 휴지, 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6.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 [소지품]
1.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한다.
2.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사탕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4.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조치를 취한다.

제26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본인의 실수나 고의로 학교 기물 및 타인 기물을 파손한 경우는 배상해야 한다.

제27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8조 [양성평등]
1.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2.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5.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29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혐오받거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제30조[의사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31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제32조 [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 및 방과 후 학교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 생활인권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행사,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교외 생활

제33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은 학교규칙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하지 않으며,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
2.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을 존중하는 언행을 하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8.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받지않도록 노동권보호, 보장에 대한 교육을 한다.

제34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의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 6 장 학생 두발・복장

제35조 [두발 규정]
1. 남, 여학생 두발 기준 :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파마, 염색, 헤어제품(무스, 스프레이, 왁스, 젤 등)의 사용은 금하며 삭발, 지나친 모양 변형을 금한다.
2. 특기신장교육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신체특성상 예외적인 머리 형태를 해야만 할 때는 담임교사 및 생활인권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 [용의·복장 규정]
1. 복장 규정
   1) 등하교 시 교복 및 활동 교복을 착용한다.
   2) 교복 및 활동 교복 디자인은 별도의 사양서로 정한다. [별첨1]
   3) 지정된 복장을 학교생활(학습,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정하게 착용하도록 한다.
   4) 계절 및 기후변화에 따라 복장은 개인이 시기를 조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5) 동절기의 경우 교복 및 활동 교복 위에 방한용 외투를 착용할 수 있고 색상, 형태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6) 여학생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치마 대신 바지를 구매 신청할 수 있고 착용할 수 있다.

2. 신발 규정
   1) 평소 활동에 편리한 신발을 신는다.
   2) 실내에서는 학생용 실내화를 신고, 신발주머니를 휴대한다.
   3) 실내화는 안전상 발을 모두 감싸는 EVA실내화를 착용한다.(슬리퍼는 착용하지 않는다.)

3. 가방 규정
   1) 책가방은 반드시 휴대한다.
   2) 책가방으로 어깨보호를 위한 학생용 배낭, 가방을 사용한다.
   (중·고등학생용 가방으로 크기가 작은 손가방, 성인가방은 금함)

4. 용모 및 기타 규정
   1) 얼굴 화장은 금한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학생, 피부 보호 목적의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허락한다.)
   2) 루즈, 틴트 바르기, 속눈썹 붙이기, 눈썹 그리기, 눈썹 파마, 손톱 메니큐어 등은 금한다.
   3) 악세사리(귀걸이, 팔찌, 반지, 목걸이 등)의 착용을 금한다.
   4) 신체에 문신자국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제 7 장 정보에 대한 권리와 예절

제37조 [정보통신예절] 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인터넷)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한 네티켓 문화를 조성한다.
2. 정보 매체를 이용한 언어폭력, 성희롱, 해킹,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는다.
4. 음란·폭력성 유해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한다.
9. 각종 고사 시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소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수업 중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기자재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38조 [개인정보보호]

1. 학생은 자신에 관한 학교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 조언, 해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한다.
4. 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이 제· 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7일 내에 개정사항을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예, 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교 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8 장 학업중단 예방

제40조 [학업중단 숙려제]

1.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2.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별첨1]

<이산중학교 교복 사양서>

■ 교복(하복,동복), 활동 교복(하복, 동복) 디자인 사양서

1. 디자인 및 색상
   가. 동복 : 가디건(네이비), 조끼(아이보리), 바지(네이비), 남학생 와이셔츠(화이트), 여학생 블라우스(화이트), 여학생 치마(체크)
   나. 하복 : 티셔츠(네이비), 반바지(그레이)
   다. 활동 교복 : 동복 상의(진곤색 집업재킷), 동복 하의(진곤색 긴바지), 하복 상의(진곤색 티셔츠), 하복 하의(진곤색 반바지)
2. 교복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상의
      1) 길이
         가) 하복 :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 ~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 - 3cm이상)
         나)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 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조끼의 경우 허리 시보리 부분이 너무 조이지 않게 함.
      2)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 - 양쪽 2cm이상)
   나. 치마
      1)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분량 - 5cm이상)
      2) 주름 :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 ~ 2cm정도)
   다. 바지
      1)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분량 - 5cm이상)
      2) 바지통 : 7.5 ~ 8인치
   라. 하복
      1) 길이 : 무릎 뒤 오금부분 정도(단분 시접분량 - 5cm이상)
      2) 바지통 : 바지통 부분은 생활복인 것을 감안하여 너무 붙지 않게 함.
   마. 교표 : 천의 재질로 상의 좌측 가슴 부분에 있는 주머니 중앙에 부착함.

원지름 4cm

   바. 단추 : 몸판과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함.

남학생 동복 디자인 및 혼용율 사양

가디건(KNIT CARDIGAN)	조끼(KNIT VEST)
▷ 색상 : 몸판 - 네이비 시보리 - 네이비+아이보리+레드 ▷ 디자인 * 브이(V)네크 니트 가디건 * 왼가슴 교표 부착 ▷ 섬유혼용률(울50%:아크릴50%)	▷ 색상 : 몸판 - 아이보리 시보리 - 네이비+아이보리+레드 ▷ 디자인 * 브이(V)네크 니트 * 왼가슴 교표 부착 ▷ 섬유혼용률(울50%:아크릴50%)/편직(이중조직)
바지(PANTS)	**와이셔츠(Y-SHI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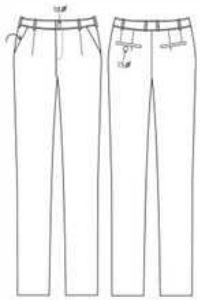	
▷ 색상 : 몸판 - 네이비 ▷ 디자인 : NO-TUCK 바지 * 허리 조절 부자재 사용 ▷ 섬유혼용률(울60%:폴리40%) * 4방향 스트레치	▷ 색상 : 몸판 - 화이트 ▷ 디자인 : Y카라 셔츠, 상 아우트 주머니 * 목안쪽, 소매안쪽 오염방지 체크원단 배색 디테일 ▷ 섬유혼용률(폴리75%:레이온25%) * 기능성(스트레치, 보온성)

여학생 동복 디자인 및 혼용율 사양

가디건(KNIT CARDIGAN)	조끼(KNIT VEST)
▷ 색상 : 몸판 - 네이비 시보리 - 네이비+아이보리+레드 ▷ 디자인 * 브이(V)네크 니트 가디건 * 왼가슴 교표 부착 ▷ 섬유혼용률(울50%:아크릴50%)	▷ 색상 : 몸판 - 아이보리 시보리 - 네이비+아이보리+레드 ▷ 디자인 * 브이(V)네크 니트 * 왼가슴 교표 부착 ▷ 섬유혼용률(울50%:아크릴50%) / 편직(이중조직)

치마(SKIRT) 또는 바지(PANTS)		블라우스(BL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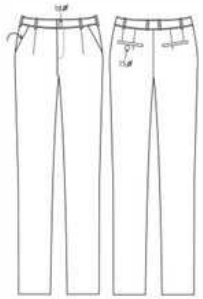	
▷ 색상 : 몸판 - 체크무늬 ▷ 디자인 * 앞판 양쪽 맞주름 2개씩 ▷ 섬유혼용률 (울60%:폴리40%)	▷ 색상 : 몸판 - 네이비 ▷ 디자인 : NO-TUCK 바지 * 허리 조절 부자재 사용 ▷ 섬유혼용률(울60%:폴리40%) * 4방향 스트레치	▷ 색상 : 몸판 - 화이트 ▷ 디자인 * 각카라 블라우스 * 목안쪽, 소매안쪽 오염 방지 체크 원단 배색 디테일 ▷ 섬유혼용률 (폴리75%:레이온25%) * 기능성(스트레치, 보온성)

하복 디자인 및 혼용율 사양

티셔츠(T-SHIRT)	반바지(SHORTS)
▷ 색상 * 몸판 : 곤색 * 배색 : 체크 ▷ 디자인 * 싱글 3버튼 Y카라 * 카라, 아시, 단작, 소매밑단, 뒷목 배색 * 앞주머니 파이핑 배색 * 옆트임 디테일 * 왼가슴 주머니 교표부착 ▷ 섬유혼용률(쿨맥스 100%) * 등판 매쉬안감 적용 * 겨드랑이 땀배출 원사패드 부착.	▷ 색상 * 몸판 : 그레이 ▷ 디자인 * NO-TUCK 바지 * 옆트임(2.5cm) 디테일 * 허리사이즈 조절밴드 ▷섬유혼용률(폴리에스테르 100%) * 4방향 스트레치 * 초발수가공

[첨부]
넥타이 디자인 및 체크 패턴 참고

넥타이(NECKTIE)	체크패턴(참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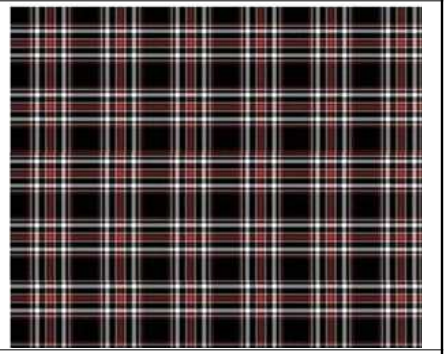
▷ 색상 * 메인원단: 스트라이프(네이비+레드+화이트) ▷ 디자인	▷ 색상 * 메인: 블랙 바탕의 레드, 화이트 포인트 체크

* 남/여 넥타이(기본) ▷ 섬유혼용률(울60%:폴리40%) * 자동 넥타이 혹은 여학생의 경우 고무줄 넥타이를 할 수 있음	

활동 교복(동복, 하복) 디자인 및 혼용율 사양

분류	DESIGN SKETCH	색 상	섬유 혼용율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동복 상의		진곤색	1, 곤색 몸판에 흰색 3cm 어깨부터 배색 2. 시보리 있음 (굵은줄, 얇은줄 배색) 3. 혼용율 폴리에스터100% 4. 이산중학교 와펜 부착
동복 하의		진곤색	1. 곤색 몸판에 흰색 3cm 옆라인 배색 2. 혼용율 폴리에스터100%
하복 상의		진곤색	1, 곤색 몸판에 흰색 3cm 어깨부터 배색 2. 목 라운드 배색(굵은줄, 얇은줄 배색) 3. 혼용율 폴리에스터100% 4.이산중학교 와펜 부착
하복 하의		진곤색	1.곤색 몸판에 흰색 3cm 옆라인 배색 2.혼용율 폴리에스터100%

Ⅱ. 학생 자치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이산중학교 학생자치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①항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자치회

제4조 [명칭]
본회는 "이산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

제5조 [목적]
본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본교 교사의 지도 조언을 받아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하며, 학생 자신의 생활향상과 교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회원]
본회 회원은 이산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 [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회와 하부조직인 학급회를 둔다.
1.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둔다.
2. 각 학년의 회장 및 부회장은 대의원으로 한다.
3.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각 부에는 부장 1명, 차장 1명을 둔다.
   ※ 부서명 : 서기, 총무부, 학습부, 문화예술부, 환경봉사부, 체육친교부, 교육급식부
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으로 이를 총괄하며,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하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대의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 사업계획의 심의와 안건처리 및 결과 보고의 승인
3. 회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정규 수업 종료 후의 시간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 학교장 또는 학교 기획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4. 의결은 대의원회의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급에서 이행하도록 전회원이 노력한다.

제9조 [각부의 임무]
제7조 제3항의 각 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서 기 :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
2. 총무부 : 학생회 행사 업무 추진, 각종 회의 소집 기록, 각종 성금 취합, 선거 사무, 학교 비품 관리
3. 학습부 : 면학 분위기 조성, 실내 정숙, 학력 향상, 학습준비, 과학 활동
4. 문화예술부 :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캠페인 활동, 학생자치회 주도 문화예술 활동
5. 환경봉사부 : 교내 환경정리 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자율 봉사 활동
6. 체육친교부 : 학교 행사 활동, 학생 친목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보건 위생 활동
7. 교육급식부 : 교육급식운영 의견 논의, 바른 식생활 홍보, 만족도 관련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등의 활동

제10조 [지도기구]
학교 기획위원회는 본 회의를 지도하며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본교 교직원으로 운영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생활인권부장은 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지도한다.

제11조 [회의 진행 요령]
각종 회의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며 회의 내용은 일지에 기록한다.
1. 개 회 사
2. 국민의례
3. 전회반성
4. 주제토의
5. 기타사항토의
6. 건의사항
7. 지도교사 지도조언
8. 폐 회 사

제12조 [학생회 의사결정 이후의 조치]
지도 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협의)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 3 장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출

제13조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1.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각각 선출한다.
2. 재학생 중 2학년은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으며, 1학년은 부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다.
3.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후보에 1명만 입후보할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4.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12월중에 실시하며 선거 실시 1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학생대의원 중에서 구성한다.(학급대표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투표일 결정에 관한 일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및 처분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제15조 [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16조 [입후보자 자격]
1.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
2. 학생자치활동에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제17조 [입후보 등록]
1.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후보등록서를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 무효 및 사퇴]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 미비 사유가 발견되거나 선거운동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선거 운동]
1.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 공고 이후부터 선거 전일 16:30 까지로 한다.
2.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학년별로 7명 이내의 선거운동원과 1명의 찬조연설원을 둘 수 있다.
3. 후보자가 제2항의 선거운동원과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원과 찬조연설원이 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 운동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하는 행위로 본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벽보]
1.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6매 이내)를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벽보의 규격은 4절지 이내로 작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붙인다. 단,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않는다.

제21조 [소견 발표회]
1. 후보자는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3. 제2항의 소견발표회에는 후보자마다 1명의 찬조연설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시간은 각 5분 이내로 하되,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역순으로 발표한다.
4.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22조 [투표]
1.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 투표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투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5. 투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6.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단, 학생증을 분실할 경우 2인이 선거권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8.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9.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개표]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일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 개표사무는 학생회 대의원이 담당한다.
3.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느 란에도 “0”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2인 이상의 란에 “0”표를 한 경우
 4)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0”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0”표를 한 경우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0”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6. 각 항 중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가 합의하였을 경우 유효표로 인정한다.

제24조 [당선인 결정 및 공고]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제1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득표한 후보자에 한하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안전생활부를 경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선인을 공고한다.

제25조 [재선거]
1.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할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될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기할 수 있다.

제26조 [보궐 선거]
1. 학생회장과 2학년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학생회장 및 부회장이 교칙 위반 사항 등으로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생활교육을 받았을 경우,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 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제1, 2항의 보궐선거 실시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4. 보궐 선거는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그 이하일 때는 부회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5. 학생회장과 부회장 중 1명이 전학(1학기 기간 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공석일 때에는 투표시의 차점자로서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재임명한다.
6. 2학기 중 부회장이 생활교육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했을 때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둔다.

제27조 [기타]
1. 선거 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 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 학교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급자치회 임원 선출

제28조 [구성] 학급자치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임원] 학급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0조 [후보 자격]
1.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급자치활동에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제31조 [선거시기] 선거 시기는 교직원의 여론을 수렴, 학교장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 초 시작 2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제32조 [임기] 임기는 해당 학기 말까지로 한다.

제33조 [선거 및 임명 절차]
1. 학급자치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은 학급 자치적으로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다.
2.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은 담임교사의 확인 후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34조 [학급회장의 지위와 임무]
1. 선생님을 도와 학급 학생을 통솔한다.
2.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 풍토를 확립한다.
3. 학급을 대표하고 학급회를 총괄하며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4. 선생님의 명을 학급학생에게 전달하고 학급학생들의 의사를 선생님께 건의 전달한다.

제35조 [부회장의 지위와 업무]
1. 선생님을 도와 학급 학생을 통솔한다.
2.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3.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 풍토를 확립한다.
4. 선생님의 명을 학급학생에게 전달하고 학급학생들의 의사를 선생님께 건의 전달한다.

제36조 [기타 임원의 임명] 각 부서의 임원선출은 학급 자치적으로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제37조 [조직 업무]
1. 학급자치회 조직과 임원의 업무 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학급을 대표하여 학급회를 총괄.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에 업무 대행.
3) 서 기 :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
4) 총무부 : 학생회 행사 업무 추진, 각종 회의 소집 기록, 각종 성금 취합, 선거 사무, 학교 비품 관리
5) 학습부 : 면학 분위기조성, 실내정숙, 학력 향상, 자기주도 학습 진행, 학습준비, 과학 활동
6) 문화예술부 :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캠페인 활동, 학생자치회 주도 문화예술 활동
7) 환경봉사부 : 교내 환경정리 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자율 봉사 활동
8) 체육친교부 : 학교 행사 활동, 학생 친목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보건 위생 활동
9) 교육급식부 : 교육급식운영 의견 논의, 바른 식생활 홍보, 만족도 관련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등의 활동

제38조 [자격무효 및 재선거]
1. 회장 및 부회장이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생활교육처분을 받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격이 상실되며, 즉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재선거는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내로 실시한다.

제39조 [보궐 선거]
1. 회장, 부회장이 생활교육, 사고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학급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보궐 선거는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2주 이내에 임명한다. 그 이하일 때는 부회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3. 보궐 선거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4. 각 부서 임원이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부원들이 협의하여 추대한다.

제40조 [회의 진행 순서]
학급 자치 회의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며 회의 내용은 일지에 기록한다.
1. 개 회 사
2. 국민의례
3. 전회반성
4. 주제토의
5. 기타사항토의
6. 건의사항
7. 담임교사 지도조언
8. 폐 회 사

제41조 [학급회 지도]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는 학급 담임이 지도교사가 된다.

제42조 [개정]
본 학생자치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Ⅲ. 학생생활교육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에 의거 학생들로 하여금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생활 지도를 하기 위해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새로운 교육 풍토를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침]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실시한다.

1.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생활교육 위주로 처리한다.
4. 학생 생활교육 사안 및 의결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한다.
5.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처분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6.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7. "훈육·훈계", 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도한다.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훈육, 훈계 (구두주의)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상담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의뢰

※ 2단계와 3단계는 병행하여 지도 가능

7-1. 2단계 지도는 교사의 인권친화적 생활지도(붙임1)로 지적받은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누적 횟수에 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붙임 1

이산중학교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학번 : _____ 학생 : _____

1. 장소 : (please check)

☐ 복도 ☐ 교실 #_____ ☐ 도서실 ☐ 화장실 ☐ 식당
☐ 강당 ☐ 교무실 #_____ ☐ 기타

2. 선생님이(please check)

☐ 그냥 지켜보는 가운데
☐ 흡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 급식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는 과정에서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 기타 _____

3. 학생이 취한 행동은(please check)

☐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는 행동을 함
☐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거나 무례한 손짓을 함
☐ 선생님의 지시에 못 들은 척하거나 무시를 함
☐ 욕설이나 유사한 모욕적인 언행을 함(예 : 이 씨~, 등등)
☐ 책걸상을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함
☐ 기타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함(_____)
☐ 허락을 받지 않고 수업을 잘라 먹는 행동을 함(_____)
☐ 수업 중 급우와 함께 학습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주의를 2회 주었으나 계속된 경우 체크)
☐ 수업 시간에 상습적으로 늦게 들어옴(2회 이상인 경우 체크)
☐ 기타 _____

☞ **칭찬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은 뒷면에**

날짜 : 20 . . . 시간: _____ 교시: _____

교사: (인 또는 서명)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하는 곳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교육도 그만큼 중요하다. 더불어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만큼 교사들의 교권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본 양식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1차 학년부에서 수합하여 관리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2차 생활인권부에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8. 2단계의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과제 부과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음 표의 내용을 활용한다.(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고)

단 계	종 류		세 부 항 목	기 간	비 고
1단계	훈육·훈계	교실안지도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수시	전교사 담임교사 생활인권부
			'생각의자'에 앉아 있기		
2단계		교실밖지도	방과 후 자기 주도 학습 실시		
		사과지도	글쓰면서 되돌아 보기(편지쓰기 등)		
		과제수행	마음을 다스리는 글, 명언, 한자 쓰기		
			교과학습활동 정리하기		
			독후감 및 감상문 쓰기		
			교내, 지역사회 봉사활동하기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상담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9.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10.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다.

제 2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조 [구성]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원 중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2.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3.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4조 [기능]

1. 학교 내의 봉사 활동 이상의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심의
2. 기타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심의
3.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심의

제5조 [회의 소집 및 의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조 [생활교육의 심의]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기록 및 사무처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생활교육 담당교사(간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3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 조치

제8조 [생활교육의 종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사회봉사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3. 특별교육이수
   1) 1일 6시간 이내, 5일 총 3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9조 [방법 및 기간]

생활교육 처분의 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 봉사

1) 등교하여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는다.

2) 해당 학생에게는 지도 활동(봉사활동, 심성교육 등)을 실시한다.

3) 지도활동은 일과시간 이외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생생활지도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4) 최종 확인과 교육 근거 자료는 학생생활지도 담당부서에서 보관하며, 생활교육처분에 의한 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으로 기재할 수 없다.

5) 학교내의 봉사 활동 이상의 생활교육 처분을 받을 경우 학부모를 내교하게 하고 등하교시 동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1) 해당 학생을 지역 행정 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

2) 사회봉사 해당자는 보호자의 서약서를 받고 봉사 장소까지의 이동은 보호자가 함께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최종 확인과 교육 근거 자료는 학년부 담당교사가 보관하고, 학년말 생활인권부에 이관하며 생활교육처분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실적으로 기재할 수 없다.

3. 특별교육이수

1) 특별교육이수기관의 경비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과정이나 교육감이 위탁을 계약한 교육기관, 기타 학교장이 권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부모는 학생을 지정된 특별교육이수기관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4) 특별교육이수는 위탁 기관의 교육과정 기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시 학부모는 학생을 지정된 특별교육이수기관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3) 출석정지의 기간에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습과제물을 부여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하게 한다.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5) 출석정지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10조 [각 학생생활교육 사유 및 범위]

각 학생생활교육의 사유 및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항	선 도 사 유	생활교육 처분 지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예절	1	욕설, 폭언 등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학생	○			
	2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 학교로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3	지도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학생	○	○	○	○
	4	교사의 권위를 모독한 학생	○	○	○	○
사이버	5	수업 중 핸드폰, MP3, 전자기기 등을 미인정으로 사용한 학생	○			
준법	6	교통안전 등의 공공질서를 위반한 학생	○			
	7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8	경찰에 연행되어 즉시 훈방된 학생	○			
	9	경찰에 연행, 구속되어 석방된 학생	○	○	○	○
	10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		○	○	○
	11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12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13	담을 넘어 다니는 행위를 하는 학생	○			
	14	학교 기물에 낙서, 파손, 미인정 사용하는 학생	○	○	○	○
	15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
	16	학교폭력 외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	○
금품	17	부당하게 금품을 절취한 학생	○	○	○	
	18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	○	○	
	19	타인의 금품을 빌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 또는 변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	○	○	
	20	금품을 교내, 교외에서 절취한 학생	○	○	○	
	21	절도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적발 통보가 된 학생	○	○	○	○

구분	항	선 도 사 유	생활교육 처분 지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수업	2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23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24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2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
	26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탐지했거나 절취한 학생	○	○	○	○
	27	고사 중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	○			
근태	28	상습적으로 미인정 결과·조퇴, 미인정 외출을 한 학생	○			
	29	미인정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30	미인정 결석 6일 이상 또는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미인정외출을 합하여 11회 이상인 학생	○			
	31	미인정 결석 11일 이상 또는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미인정외출을 합하여 21회 이상인 학생	○	○		
	32	미인정 결석 16일 이상 또는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미인정외출을 합하여 31회 이상인 학생	○	○	○	
	33	정당한 사유 없이 21일 이상 미인정 결석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학생	○	○	○	○
흡연약물	3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담배, 라이터 소지 학생 포함)	○	○		
	35	흡연 또는 음주 행위를 반복한 학생	○	○	○	
	36	본드, 환각제, 마약류 등 향정신성 약품을 흡입 복용한 학생	○	○	○	○
	37	본드, 환각제, 약물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흡입 복용한 학생		○	○	○
퇴폐행위	38	도박을 한 학생	○			
	39	도박 행위를 반복한 학생	○	○		
	40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41	불량(음란) 서적, 영상, 음성파일을 제작·소지·탐독하거나 시청한 학생	○	○		
집단행위	42	불법 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43	학교장의 허가 없이 외부 행사에 출연,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		
	44	수업 거부 등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집단행동을 주도한 학생	○	○	○	○
기타	45	제1항부터 제45항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제11조 [사안설명]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해당학생의 보호자에게 일시, 장소, 개최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2조 [심의절차 및 조치]

1.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위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2.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13조 [생활교육 내용의 통지]

1.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 조치에 따른 불복 처리 방법 및 청구기간을 안내한다.

제14조 [생활교육학생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단, 고사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생활교육의 경감 및 가중]

1. 생활교육 완료 전이라도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교육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에 임하는 학생의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생활교육 절차를 진행한다.
3. 생활교육처분 지도 기간 중 학교 내 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생활교육 절차를 진행한다.
4. 사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학년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2회 이상 회부된 학생은 횟수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

제16조 [생활교육해제]

담임교사와 학생안전지원부장, 학년담당부장이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해제를 건의하면 학교장은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생활교육을 해체할 수 있다.

제17조 [사후지도]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생활교육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18조 [출결처리]

1.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형사처벌로 인한 구속 또는 교육 기간은 사고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9조 [결정]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안건의 의결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재심의 및 재심]

1.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학교 내 재심의	- 학생 및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 학교장은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 결정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한 절차로 처리 -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음 - 재심의는 1회만 신청 가능 - 재심의 신청 시 재심의 결정 때까지 원 조치 유보
도교육청 징계조정 위원회	- 퇴학 조치 시에만 - 조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처리
행정심판	- 모든 조치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징계조정위에서 재심을 했으면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사소송 (사립= 민사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제21조 [특정 사안 처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개정]

본 학생생활교육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Ⅳ.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근거] : 경기도 조례 제4085호

> 제5장 보칙
>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 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2조 [위원회 설치목적]

1.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2.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며, 학생·교원·학부모 또는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2.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3.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방법]

1.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4.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2.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다음 절차와 방법으로 학교 여건 및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한다.

사전 준비
학교장 가정통신문 발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준비, 교원·학생·학부모 안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 대표 포함

↓

제정·개정안 발의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
학교구성원 간의 초안 작성

교원	학생	학부모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한 규정 협의	**학생 스스로 만드는 생활 규정**	**학부모가 참여하는 생활규정**
부서별 회의 (학년 회의) ↓ 전체 교사 회의	학생교육 ↓ 학급회의 ↓ 학생 대의원 회의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 학년별 학부모 회의 ↓ 전체 학부모 회의

↓

교원·학생·학부모 토론회 및 공청회
학교구성원 간의 초안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

↓

규정안 조정 회의 및 합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최종 시안 마련

↓

심의·확정
학생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 개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교육장에게 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된 학생생활규정 교육장에게 보고

↓

공포 및 정보 공시
학생생활규정 5일 이내 공포 및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

안내 및 연수 실시
학생생활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식 권장, 안내 및 연수

제7조 [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개정]

본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3월 6일 제정하고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8월 24일 개정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1월 30일 개정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4월 10일 개정하여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3조 복장규정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6. 본 규정은 2019년 9월 4일 개정하여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6일 개정하여 202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4년 8월 30일 개정하여 202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1일 개정하여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6년 8월 27일 개정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반	
스마트기기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 조항 해당 여부	☐ 해당 : ☐ 제1호(보조기기), ☐ 제2호(교육 목적) , ☐ 3호(긴급 상황 대응) ☐ 미해당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 학생의 스마트기기(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2. 허가받은 개인용 스마트기기의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3.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스마트기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2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지도비 지급 근거로 사용 가능)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

<이산중학교>

날짜	2026. 0. 00.(목)	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	oo실		
대상학생(학번,이름)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유	분리시간	학습지원 내용	지원 후 학생 상태	지도교사
10305 박○○	폭언으로 수업 방해	10:00~10:20 (20′)	교과연계 활동 자료, 교과서 요약, 온라인 학습 등	인정 부분 인정 불인정	홍길동
				인정 부분 인정 불인정	
				인정 부분 인정 불인정	
				인정 부분 인정 불인정	
				인정 부분 인정 불인정	
				인정 부분 인정 불인정	
				인정 부분 인정 불인정	
				인정 부분 인정 불인정	
				인정 부분 인정 불인정	
				인정 부분 인정 불인정	

서식3 개별학생교육지원으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 인계 요청서

보호자님께

이산중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히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인계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가정학습 과제 실시) 학생이 가정에서 아래의 '가정학습 과제'를 실시하도록 협조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31-831-5100(교무실)

20 년 월 일

이산중학교장 (직인 생략)

보호자 인계 확인서

다음과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학생 성명:

보호자 인계 일시	보호자 인계 사유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00시 00분	교육활동 지속 방해	(예: 000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인계자 성명	(서명)	
인계자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학생을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인 본인에게 학생 인계를 위임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학생을 인계함		

이산중학교장 귀하

서식4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